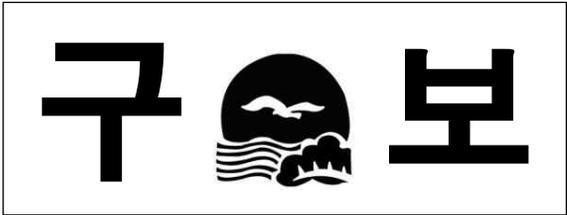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 중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결	기 관 의 장



제 1384 호

2023년 11월 27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○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23-259호 (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 계획(변경)인가 고시) 3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834호 (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) 6

○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835호 (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) 8

○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23-1837호 (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)
..... 10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중구

편집 : 홍보체육실

고 시
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259호

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-169(2020.9.18.)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의 실시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(도시계획과 ☎032-760-7518, 도시개발과 ☎032-760-7657)에 갖추어 두고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3. 11. 27.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1. 변경사유

-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

2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

-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79번지 일원
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- 명칭: 신흥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
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- 면적(A) = 2,823.4㎡
- ※ 중구 고시 제2019-169호의 사업면적 오기 정정(2,808㎡ → 2,823.4㎡)
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- 성명: 인천광역시 중구청장(도시개발과)
- 주소: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(신포동)
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
당초	변경	비고
2020. 9. 18. ~ 2023. 12. 31.	2020. 9. 18. ~ 2025. 12. 31.	2년연장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불입(변경없음)**8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불입(변경없음)**

[붙임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, 주소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공부	편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관리관계	
1	신흥동1가	84-3	대	81.00	81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	신흥동1가	84-5	대	46.30	46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	신흥동1가	84-2	대	78.30	78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4	신흥동1가	84	대	79.70	79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5	신흥동1가	79-3	대	76.00	76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6	신흥동1가	79-2	대	122.30	122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7	신흥동1가	72-1	대	45.60	45.6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8	신흥동1가	73-2	대	7.70	7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9	신흥동1가	72-2	대	43.60	43.6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0	신흥동1가	34-57	대	82.30	82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1	신흥동1가	74-7	대	40.00	40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2	신흥동1가	74-5	대	66.70	66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3	신흥동1가	74-6	대	66.80	66.8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4	신흥동1가	74-2	대	27.80	27.8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5	신흥동1가	34-59	대	84.30	84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6	신흥동1가	34-97	대	160.60	160.6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7	신흥동1가	34-77	대	85.60	85.6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8	신흥동1가	34-36	대	79.30	79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19	신흥동1가	34-76	대	78.70	78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0	신흥동1가	34-63	대	73.70	73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1	신흥동1가	34-73	대	54.50	54.5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2	신흥동1가	34-95	대	61.50	61.5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3	신흥동1가	34-69	대	61.80	61.8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4	신흥동1가	34-75	대	4.00	4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5	신흥동1가	34-74	대	65.40	65.4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6	신흥동1가	34-70	대	99.20	99.2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7	신흥동1가	34-58	대	166.00	166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8	신흥동1가	34-64	대	36.40	36.4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29	신흥동1가	34-68	대	79.30	79.3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0	신흥동1가	34-96	대	64.10	64.1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1	신흥동1가	79	대	238.50	238.5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2	신흥동1가	98-5	대	5.10	5.1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3	신흥동1가	75-5	대	67.40	67.4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4	신흥동1가	75-10	대	74.70	74.7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5	신흥동1가	75-2	대	152.00	152.0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36	신흥동1가	98-7	대	167.20	167.20	중구(인천광역시)					
계				2,823.4	2,823.4						

공 고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834호
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위반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- 1. 처분제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
- 2. 법적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, 제6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
- 3. 공고대상자

순번	성명	주소	행정처분내용	공시송달 사유
1	이*상	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-1, 1동 401호	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	폐문부재
2	전*인	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-1, 2동 202호		폐문부재
3	이*아	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254번길 100-1, 1동 303호		폐문부재

- 4. 공고기간 : 2023. 11. 27. ~ 2023. 12. 12. (15일간)

5. 공고사항

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 위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앞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,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(☎032-760-7698, FAX.032-760-6997)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아울러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다. 「행정절차법」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.
- 라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% 감경 조치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, 중증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 이상),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(단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감경은 불가)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☎032-760-769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835호
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위반자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의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1. 처분제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
2. 법적근거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3항, 제68조제3항
3. 공시송달 대상자

순번	성명	주소	행정처분내용	공시송달 사유
1	송*봉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106, 611동 1704호	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	기타
2	백*나	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106, 611동 1704호		기타
3	김*은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136, 902호		수취인불명

4. 공고기간 : 2023. 11. 27. ~ 2023. 12. 12. (15일간)

5. 공시송달 내용

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, 공고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중구 친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친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(☎032-760-769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837호
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 위반자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8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7일
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
- 1. 처분제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
- 2. 법적근거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1항, 제68조제3항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
 -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
 -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- 3. 공시송달 대상자

순번	성명	주소	공시송달 내용	공시송달 사유
1	서*연	인천광역시 서구 이음2로30, 612동 2202호	재산압류통지 (384무1321)	기타
2	양*석	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진로19, 201호	재산압류통지 (50고5782)	폐문부재
3	강*수	인천광역시 두미포로244, 6703동 906호	재산압류통지 (232우9546)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 : 2023. 11. 27. ~ 2023. 12. 12. (15일간)

5. 공시송달 내용

가. 귀하께서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납부 독촉하였으나, 독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보유하고 계신 재산(자동차)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나.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친환경위생과(☎ 032-760-7698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